

1

1 ()

2 ()

가

가

)
가 가

가

가

3 ()

1. " "

가

가

2. " "

3. " "

4. " "

5. " " 가

5. " " .

, 1 .

7. " "

4 ()

11 30

1.

2. .

3.

4. .

5.

6. 5

7. .

12 15

가

3

1 31

6 ()

()

3 31

2

4 30

가

가

23 1

6 ()

7 ()

8 ()

9 ()

2

2

10 ()

11 ()

가

12 ()

2

2

3

1

2

가

13 ()

1

2

가

가

14 ()

.

,

,

.

,

가

.

가

가

.

15 ()

.

.

.

.

,

.

.

1

.

16 ()

.

17 ()

, 10 31

1

2

3

18 ()

1.

2. ,

3. .

4.

19 ()

1

1

1.

2.

3.

4.

5.

6.

7.

1

가

1

4

20 ()

21 ()

1 31

- 1.
- 2.
- 3.
- 4.
- 5.

가

1

22 ()

2

4

23 ()

24 ()

(" ")

- 1.
- 2.

3.

4.

5.

25 () , 1 13
,
, 2 3
가

26 () ,
.
, 가
.

27 ()
가 .
,

28 () 1 ,
가 .

29 ()
.

30 ()

5

31 ()

(184)

2

가

32 ()

() 1984 11 10 .

() 185

187 . .

.

(.)

.

.

.

()

선명 및 선색 표시방법

1. 선명표시방법

가. 지역표시

도 명 (지역)	표 시	도 명 (지역)	표 시
서울특별시	서울	충청남도	충남
부산직할시	부산	전라북도	전북
대구직할시	대구	전라남도	전남
인천직할시	인천	경상북도	경북
경기도	경기	경상남도	경남
강원도	강원	제주도	제주
충청북도	충북		

* 위의 지역은 선적이 속하는 시·도를 기준으로 한다.

나. 기능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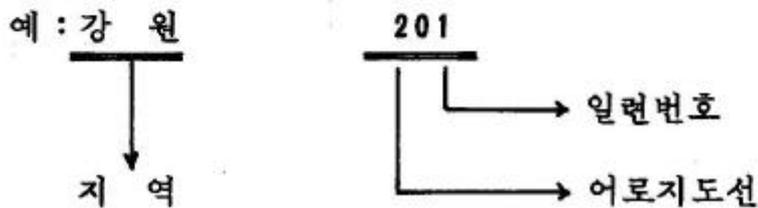
기 능	번 호	비 고
어 로 지 도	2	어로지도선
출입국관리	3	세관감시선, 검역선, 출입국관리선 등
학 교 실 습	4	학교실습선, 훈련소실습선 등
행 정	5	행정선, 장학선, 자연보호선, 병원선 등
통 학	6	통학선
지 원	7	급수선, 인명구조선, 도선, 소방정 등
조 사	8	시험조사선, 수로측량선, 해양조사선 등
항 만	9	항만순찰선, 청항선, 표지선, 항만작업선 등

다. 선박별 일련번호

관공선 보유관서의 장이 선박별로 01-99까지 임의로 부여한다.
다만, 해운항만청장은 그 번호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.

라. 표시방법

- (1) 선박법시행규칙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한다.
- (2) 지역명칭과 기능 및 선박별 일련번호를 같은 크기로 가로로 표시하되 명칭과 번호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



2. 선색 표시방법

가. 병원선 : 백색 (선체에 녹색자를 표시한다)

나. 소방정 : 선체 - 적색

구조물 - 백색

다. 기타 관공선 : 선체 - 회색

구조물 - 백색

3.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시행령 제 2 조제 11 호 및 제 12 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관공선에 대하여는 이 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선명과 선색의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운항만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